

부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58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580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소4944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연합회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0. 5. 22.

판결 선고 2020. 8. 21.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소4944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16,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와 그 회사 소유의 D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는 2017. 2. 27. 17:4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앞편도 3차로 일방통행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자성대 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도로 1차로 위에 서 있다가 차로를 가로질러 2차로에 정차 중이던 다른 버스 앞을 지나 3차로를 지나가던 이 사건 버스 앞으로 뛰어 들어와 위 버스와 부딪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4. 25.경부터 2019. 8. 13.경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공제금 합계 12,316,340원을 각 해당 병원에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버스 승객 H에게 지급한 합의금 및 치료비에 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787에서 위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위 판결은 2019. 4. 19.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2018나3592)을, 상고심에서 상고기각판결(2019다13582)을 받아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각 병원에 지급한 피고의 치료비 총액 12,316,34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여야 하고(제10조 제2항),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의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되며(제10조 제4항), 위 각 규정을 위반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157조 제1호)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관한 이러한 규정의 위반은 법상의 주의의무위반으로서 타인에 대한 의무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보행자가 이에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케 하였다면 보행자의 그러한 잘못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721 판결 참조).

2)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확정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① E는 이 사건 사고 바로 전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이 사건 도로를 제한속도에 못 미치는 저속으로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 ② 당시 이 사건 도로의 1, 2차로에는 차량들이 줄지어 선 채 정차한 상태였고 특히 이 사건 버스의 바로 옆 2차로에는 다른 버스가 정차해 있었던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무단횡단을 하면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앞만 바라보면서 이 사건 버스 앞을 횡단하였던 사실, ④ 이 사건 버스의 전면에서 17:40:45경 이 사건 도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다른 버스 앞을 지나오는 피고의 모습이 보이고, 약 1초 후 이 사건 버스와 피고가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여러 증거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위와 같은 사실을 배척할 만한 아무런 증거나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E가 피고를 발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E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버스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치료비 12,316,3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한 셈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12,316,3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1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영표

판사이재덕

판사홍준서